2022학년도

입학 전형 요강(추가모집)

2022. 1.

보인고등학교

(www.boin.hs.kr)

2022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안)

1 모집 인원 (남 12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비 고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63명	
	소 계(A)	63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8명	
	고입특례대상자전형	6명	
	소 계(B)	14명	
총 모집인원(A+B)		77명	

1) 지원자는 **후기 일반고에 지원한 경우 추가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단, 후기 일반고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2) 체육특기자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5)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로서 해당 지역(경남, 제주, 세종)에 거주하는 자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table>
<tr><th colspan="3">전형 구분</th><th colspan="3">유형별 지원 자격</th></tr>
<tr><td rowspan="6">정원내</td><td colspan="2">일반전형</td><td colspan="3">공통자격을 갖춘 자</td></tr>
<tr><td colspan="2">체육특기자전형</td><td colspan="3">『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축구 종목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td></tr>
<tr><td rowspan="4">사회통합전형</td><td rowspan="3">기회균등전형</td><td rowspan="3">60% 우선선발</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td><td>※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td></tr>
<tr><td>○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td><td>※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td></tr>
<tr><td>○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참고자료 5」 참조</td><td>보훈자 자녀</td></tr>
<tr><td rowspan="2">사회다양성전형</td><td>1순위</td><td>○「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td><td rowspan="2">※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td></tr>
<tr><td>2순위</td><td>○「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td></tr>
<tr><td rowspan="2">정원외</td><td colspan="2">보훈자 자녀 전형</td><td colspan="3">○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참고자료 5」 참조</td></tr>
<tr><td colspan="2">고입특례대상자 전형</td><td colspan="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td></tr>
</table>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증빙 서류**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

※ **위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 요건**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라. **기회균등전형 보훈자 자녀**의 조건인「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3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4)「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안내 사항

❶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
20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2. 사회통합전형 중『사회다양성전형』

가.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사항 :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참고자료1, 참고자료 2 참고)**

나. 다문화가정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라.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4.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복 실시함.

[1 단계] 고입 지원 예정자	⇨	[2 단계] 대상자 추천위원회	⇨	[3 단계]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4 단계] 중학교장
중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사 (1차)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의(자문) (2차)		학교장 확인서 발급

⇨	[5 단계] 고입 지원자	⇨	[6 단계] 고등학교	⇨	[7 단계] 고등학교	⇨	[8 단계]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의 (3차)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보훈자 자녀, 기준중위소득 50%~60%이하 대상자로서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단계] 심의(자문) 제외 가능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table>
<tr><th colspan="5">대상</th><th>유형별 제출 서류</th></tr>
<tr><td colspan="5">모든 지원자 (공통)</td><td>o 입학원서 1부 (붙임 파일 참조)
o 주민등록등본 1부(단,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o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관할 재외 한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td></tr>
<tr><td colspan="5">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이하 검정고시 합격자)</td><td>o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합격증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1부</td></tr>
<tr><td colspan="5">일반전형</td><td>o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5">체육특기자</td><td>o 체육특기자 증명서(출신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1부</td></tr>
<tr><td rowspan="11">사회통합 전형</td><td colspan="4">사회통합 전형 공통</td><td>o 2022학년도 고입(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o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o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td></tr>
<tr><td rowspan="10">기회균등 전형</td><td rowspan="10">60% 우선 선발</td><td colspan="2">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td><td>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td></tr>
<tr><td colspan="2">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td><td>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tr>
<tr><td rowspan="5">법정차상위대상자</td><td>차상위자활대상자</td><td>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tr>
<tr><td>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td><td>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1부</td></tr>
<tr><td>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td><td>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tr>
<tr><td>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td><td>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tr>
<tr><td>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td><td>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tr>
<tr><td rowspan="2">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td><td>기준중위소득 50%이하</td><td>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tr>
<tr><td>기준중위소득 60% 이하</td><td>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td></tr>
<tr><td colspan="2">학교장 추천자</td><td>• 2022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td></tr>
</table>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보훈자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참고자료 5」참조
사회통합전형	**사회다양성전형**	**공통(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단, 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단,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위 이하)	
보훈자자녀 전형		o 2022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o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1부 ※「참고자료 5」참조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o 2022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o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o 특례 입학 대상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경남, 제주 및 세종 출신 지원자만 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4 선발 방법

가. 사회 통합 전형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나. 선발 방식 : 공개 추첨 (사회통합전형, 체육특기자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5 전형 일정 및 세부 사항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접수	2022. 1. 13(목) ~ 1. 14(금) (업무시간 09:00~17:00)
추첨	2022. 01. 17(월) 10:00 (장소는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2022. 1. 19(수) 14:00 본교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기간	2022. 1. 25(화) ~ 1.27(목)

※ 학생부 출결 마감 기준일은 2021.11.19.(금)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서 접수

(1) 접수처 : 본관 1층 행정실

(2) 제출방법

반드시 본교를 방문하여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전형료 결제

입학원서 제출시 전형료 7,000원을 결제하여야 함.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 2022. 01. 19(수) 14시

나. 본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접수번호 공지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다. 추첨 참관자는 추첨 현장에서 바로 합격자 확인 가능

라. 합격자 예비소집 : 추후 공지

마.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2.1.25.(화) ~ 1.27.(목)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한다.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중으로 지원하는 자

8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교육비 지원

1) 2022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2022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교육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3) 참고: 「2021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안내

○ 학비 지원 : 법정 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table>
<tr><th rowspan="2">입학전형</th><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th></tr>
<tr><th>국민기초생
활수급(권)자</th><th>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th><th>법정차상위
대상자</th><th>중위소득 60% 이하</th></tr>
<tr><td rowspan="2">기회균등전형</td><td>입학금
수업료</td><td>전액 지원
(교육급여)</td><td>지자체 1/2
교육청 1/2</td><td>교육청 전액
지원</td><td>교육청 전액
지원</td></tr>
<tr><td>학교운영지원비</td><td colspan="4">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td></tr>
<tr><td rowspan="2">사회다양성전형
일반 전형</td><td>입학금
수업료</td><td>전액 지원
(교육급여)</td><td>지자체 1/2
교육청 1/2</td><td>교육청 전액
지원</td><td>교육청 지원
(362,700원
이내)</td></tr>
<tr><td>학교운영지원비</td><td colspan="4">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td></tr>
</table>

※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2021학년도부터 단계별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지원 기준에 따름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항목 및 자격

지원 항목	입학 전형	지원 자격		대상 확인
[총 4종] 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② 수련활동비 ③ 앨범비 ④ 기숙사비	공 통 (입학전형 무관)	법 정 저소득 자 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NEIS > 학생복지 > 교육비지원 > '심사관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소득인정액 기 준**	**중위소득 50%이하**	
	공통 (입학전형 무관)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	

- 항목별 지원 단가

지원 항목	단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400,000원 이내 실비
2. 수련활동비	1인당 140,000원 이내 실비
3. 앨범비(3학년)	1인당 50,000원 이내 실비
4. 기숙사비(기숙사 입사생)	학교별 순수 기숙사비 50% + 기숙에 따른 조 · 석식비 전액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은 학기 중 법정 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구 분	프로그램 내용(제목)
학교생활 적응	Forsythia(개나리) 프로그램
학업증진	Ginkgo(은행나무) 프로그램
	심층면접 독서 아카데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문화공연체험단
	힐링아트 – 프라모델
	기타연주반
	레포츠 프로그램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	창체 포트폴리오 컨설팅 프로그램
	창의인성 아카데미 지원
	원서비 지원

※ 상기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장학금 지원

장학금 명칭	지원 대상 및 금액	
대주 장학금	중학교 내신 및 장학생 선발고사 우수자	등급별 차등지급
인성 장학금	중학교 내신 우수자	등급별 차등지급
인재 장학금	선발고사 우수자	등급별 차등지급
일웅 장학금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 전형 입학생	등급별 차등지급
멘토멘티 장학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동문 및 사회 저명인사들과 멘토-멘티로 연결,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성적우수 장학금	학년별 성적 우수자	학기별 지급
개구리 장학금	개인별 성적 향상도에 따라 지급	학년별 지급
꿀벌 장학금	학급별 학력신장도에 따라 지급	학기별 지급
형제장학금	형제 2명 이상 재학생	3년에 1회 지급

9 기타 유의 사항

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72호, 시행 2021.3.1.)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및 교육연구부에 문의

<입학관련 문의>
(우)057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9길 18 (오금동)
홈페이지 : www.boin.hs.kr/
대표전화 ☎ 02)2043-6021, FAX 02)449-8064
교육연구부 ☎ 02)2043-6021(내선 330)

참고 자료 1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최소 원서 접수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가구원 수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하여 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및 재산세 기준 적용

※ 2021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금액 적용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재산세납부금액*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출처: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2.) 및 서울특별시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재산세는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참고 자료 3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구분	순위	지 정 대 상 자	비고
기회균등 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계고(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고(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이 아닌 별도 전형계획에 의거 전체 모집 인원의 2~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보훈자 자녀 전형 (정원 외)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학비 면제 대상

*** 지원 당시 소속 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동주민센터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50% 이하 · 기준중위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
	학교장추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훈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사회다양성전형	공통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동주민센터
	1순위	다문화가정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해당서류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기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단,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 로 발급받아 제출)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위 이하)		
정원외	보훈자 자녀 전형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참고 자료 5 사회통합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제출서류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대상으로 별개 사항임

[붙임1]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발급 번호	2021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원내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가구원수 (인)
			2순위	유형 ( ), 가구원수 (인)
정원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위 학생을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보훈자자녀, 특례대상자) 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인)' 으로 수정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임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수 기재
- 보훈자자녀전형 :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2]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접수 번호	2021 -

<table>
<tr><td rowspan="2">성 명</td><td>학 생</td><td colspan="2"></td><td rowspan="2">생년
월일</td><td>학생</td><td></td></tr>
<tr><td>학부모</td><td colspan="2"></td><td>학부모</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출신학교
(검정고시)</td><td colspan="6">(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td></tr>
<tr><td rowspan="4">지원유형
및
지원자격</td><td rowspan="3">정원내</td><td rowspan="3">사회통합전형</td><td>기회균등전형</td><td>60%
우선</td><td colspan="2">유형 (　　)</td></tr>
<tr><td rowspan="2">사회다양성전형</td><td>1순위</td><td colspan="2">유형 (　　), 가구원수 (　　인)</td></tr>
<tr><td>2순위</td><td colspan="2">유형 (　　), 가구원수 (　　인)</td></tr>
<tr><td rowspan="2">정원외</td><td colspan="2">보훈자자녀전형</td><td></td><td colspan="2">교육지원대상자 (　　)</td></tr>
<tr><td colspan="2">고입특례대상자전형</td><td></td><td colspan="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td></tr>
</table>

위의 해당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학 생　　(서명)

학부모　　(서명)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 번호 :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 전형별 접수 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수 기재
- 보훈자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O'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3]

2022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 번호	2021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학교장 추천 요건만 기재할 것, 3쪽 참조)

2021년　　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 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 '학교장 확인서'와 '학교장 추천서', 증빙 자료 모두 제출)

[붙임4]

202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td><td>수험번호</td><td colspan="4">※ 추후 면접 시 본교에서 부여함</td></tr>
<tr><td rowspan="5">지원자</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성별</td><td></td><td rowspan="3">연락처</td><td>본인
휴대전화</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우편번호:</td><td>보호자
휴대전화</td><td>☏</td></tr>
<tr><td>학 력</td><td colspan="5">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졸업예정( ) · 졸업(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 )]</td><td>출신중학교</td><td>☏</td></tr>
<tr><td>중학교
주 소</td><td colspan="5">우편번호:</td></tr>
<tr><td colspan="2">전형 구분</td><td colspan="2"></td><td>사회통합전형
유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담임교사
확인</td><td colspan="5">( )학년 ( )반 담임교사 ( ) ㊞</td></tr>
</table>

사 진
(3㎝ x 4㎝)
최근 3개월
이내

출신학교장
직인

위 학생은 2022학년도 귀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보호자: (인)

지원자: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사진에도 날인**)

[붙임5]

입학원서 (1차 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성 명	

2022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21년 12월 일

보인고등학교장

절취선

1차 서류 접수 현황
(학교 보관용)

접수번호		
성 명		
출신중학교		
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유형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출신중학교	

1차 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
2.
3.
4.
5.
6.
7.
8.
9.
10.

※ 2. ~ 10.에는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직접 기재하세요.

[붙임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안내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91조의3, 제97조, 제106조의3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원자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출결사항
- 보호자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생년월일, 건강보험료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 출입국사실**

* 사회통합전형 해당자에 한함, **고입특례대상자전형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91조의3, 제97조, 제106조의3

2. 민감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학생 및 학부모 장애 정보(사회통합전형 중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확인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앙방역대책본부, 경기도교육청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이중지원 확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코로나19 관리대상자(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제공 항목)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출신 중학교명, 지원 고등학교명, 합격·불합격 여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106조의3